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2025년도 제46회 정기총회
정부포상 계획(안)

2024. 12. 02.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Ⅰ	추진 배경 및 기본 방침

1. 추진 배경

○ 매년 우리 조합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 의료기기 기업의 산업발전 및 수출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조합과 조합원사의 유대관계를 고취시키고 조합원사 발전 및 조합 활성화를 도모

2. 기본 방침

□ 포상 대상자 추천원칙

○ 포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공적내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실시를 통한 사전 검증절차가 완료된 자에 대하여 추천

Ⅱ 포상 계획

1. 포상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제46회 정기총회시 포상 예정)
○ 장소 : 호텔 리베라 청담 (예정)

2. 2025년 포상 계획(안)

○ 포상 인원(안)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0명)
-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표창 (0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0명)
-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0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0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0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표창 (0명)

Ⅲ 추진 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2024. 12. 2.(월) ~ 2024. 12. 27(금))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 포상대상자 선정
○ 해당 부처에 제출
○ 각 부처별 표창장 인수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제46회 정기총회 시 포상 수여

Ⅳ	행정 사항

○ 제출기한 : 2024. 12. 27. (금) 18시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경영지원실

송해은 사원(070-8892-3742/eun@medinet.or.kr)

< 추천기준 및 추천제한 >

1. 추천기준

훈격	추 천 기 준
장관 및 처장 표창 등	○ 의료기기업계 소속 대표 및 임직원으로서 신기술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내수확대 및 수출확대를 통하여 우수의료기기보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수공기간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년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2년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3년 이상, 그 외 부처 및 기관 수공기간 제한 없음.)

2. 포상 추천제한 [각 기관별 양식에 추천제한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 하단 내용 참고 요청]

1)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을 받거나,

종료된 후 5년을 경화하지 아니한 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 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의료기기법령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최근 2년 이내 의료기기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그 임원 등

○ 상기의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 그 처분사항이 미미하거나 기관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행정처분 부서의 장이 확인하는 경우는 추천 가능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대상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해당 행정처분 사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추천 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 대상자별 제출서류 목록

1. 포상・표창 추천자 현황 1부.(각 부처별, 기관별 양식 참고)
2. 공적요약서 1부(각 부처별, 기관별 양식 참고)
3. 공적조서 1부(각 부처별, 기관별 양식 참고)
4. 현지확인서 1부(각 부처별, 기관별 양식 참고)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각 부처별, 기관별 양식 참고)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6.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각 부처별, 기관별 양식 참고)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각 부처별, 기관별 양식 참고)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8. 포상추천 대상자 등 연락처 1부(공통)
9.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공통), 의료기기제조업 허가증 1부 - 기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 조회용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체는 해당 허가증·신고증 사본을 같이 제출

□ 제출서류 작성요령

서류명	작성 요령
공적조서	○ 공적조서는 반드시 각 부처별, 기관별 포상양식을 사용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1부 제출 〔조사자 및 추천관은 조합에서 작성〕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수치 등을 기록 ○ 공적조서 상의 추천훈격 란 및 추천순위 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어야 함. ○ 공적요약서와 공적조서 상의 수공기간은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표창)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적조서 작성기준 시점은 2024년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포상 추천자 훈격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 시 각 부처별, 기관별 작성양식 및 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제출

-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하고, 공적개요는 반드시 50자~70자 이내로함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조합에서 작성함)

- 기관명칭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

○ 포상・표창추천자의 구비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여 제출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2024.12.27. (금))내 제출

*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제출기한 준수

○ 문의사항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경영지원실 송해은 사원(☎ 070-8892-3742 / eun@medinet.or.kr)로 문의